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일자 : 2002. 7. 18

제출자 : 사천시장

1. 제정이유 :

- 대방 ~ 창선간 연륙교 개통 대비 및 대진고속도로 개통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시의 관광환경이 급변하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하여 관광종합 지원시설 부지안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 또한, 관광종합 지원시설 설치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시설물을 민자유치 기부채납토록 하여 민간 참여에 의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관광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유치 및 규모(안 제3조)
- 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자유치 기부채납 설치(안 제4조)
- 다. 관광종합지원시설물의 위탁운영 및 사용허가(안 제6조)

3. 관련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35조
- 나.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제109조
-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 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제2호
- 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 바.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사천시주차장조례

4. 조례제정(안) : 별첨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02 5. 27 ~ 6. 15(20일간)
-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시·읍·면·동계시판, 사천시홈페이지 게재
-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 “관광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원시설”이라 함은 공공투자 또는 민자유치로 설치한 주차시설,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물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차시설”이라 함은 관광지원시설 부지 안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라 함은 관리사무실,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장, 음식점 등을 갖추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레포츠센터”라 함은 낚시, 스킨스쿠버 등의 용품 판매와 종합레저 관련 강습·정보 공유 등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기타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화장실, 관광종합홍보관, 상·하수도, 전기, 통신,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규모) 관광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사천시 대방동 765-3번지, 765-4번지, 765-9번지에 둔다.
2. 규모는 부지면적 18,389평방미터로 한다.

제4조(설치) ① 관광지원시설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관광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기타사유로 시가 설치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등) ① 관광지원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의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시설의 위탁 운영시에는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

③제2항의 의한 재산평정 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설명령 등) 시장은 관광지원시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협약사항 또는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및 부당 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허가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하여 재산가치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거나 시설물을 임의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2. 사용·수익허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 배상책임) ① 사용기간 중 내외 설비 기타시설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사용 허가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사천시주차장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